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서천호 · 강대식
김장겸 · 이양수 · 이종배
김상훈 · 서지영 · 김대식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22년 1월 「정당법」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,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기후위기, 교육정책,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. 아울러 오스트리아,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

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·제2항, 제60조제1항제2호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18세”를 각각 “16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세”를 “16세”로 한다.
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16세 미만의 자

제161조제7항 중 “未成年者”를 “16세 미만의 자”로 한다.

제181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16세 미만의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<u>18세</u>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. 다만,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<u>18세</u>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.	제15조(선거권) ① <u>16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16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<u>18세</u>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.	② <u>16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	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자·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 략) 2. <u>미성년자(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3. ~ 9. (생 략) ② (생 략) 第161條(投票參觀) ① ~ ⑥ (생 략) ⑦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·<u>未成年者</u>·第18條(選舉權이 없는 者)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·第53條(公務員 등의 立候補)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·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. ⑧ ~ ⑭ (생 략) 제181조(개표참관) ① ~ ⑩ (생 략)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16세 미만의 자</u> 3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第161條(投票參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<u>16세 미만의 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⑧ ~ ⑭ (현행과 같음) 제181조(개표참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⑪ ----- -----
--	--

될 수 없다. 1. (생 략) <u>2. 미성년자</u> 3. · 4. (생 략) ⑫ (생 략)	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16세 미만의 자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⑫ (현행과 같음)
--	---